정책 제안서

행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공무원 교육과 매뉴얼 제안

작성 참여 김은준 · 정용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청년참여)」 제안사업 신청서

제안 개요

항목	내용
제안 사업명	행정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메뉴얼 제공 사업
사업대상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및 경기도민 전체(간접 수혜자)
총 소요사업비	70,000천원
산출내역	70,000천원 (교육 운영비(강사료, 교재비, 프로그램 운영비) 40,000천원 +쉬운 언어 매뉴얼 제작비 30,000천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1년 이내)
사업지역	경기도

사업목적

본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 매뉴얼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및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한 행정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쉬운 언어 사용, 수어 및 음성 안내 활용 교육 및 메뉴얼 제공을 통해 포용적 행정 환경을 조성한다.

추진근거

대한민국헌법

□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

□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어기본법

□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예외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② 장애인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가급적 도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1. 사업대상(수혜자)

- 사업대상자: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및 경기도민 전체(간접 수혜자)

- 추진방법: 온·오프라인 관련 교육

- 예산 용도: 강사비, 장소 대관비 등

2. 사업내용

가. 공무원 대상 정보 접근성 향상 이론 및 교육 실시 (온라인 및 집합 교육)

- 정기적인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 기존 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진행

- 주요 내용: 정보 접근성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소개, 국내외 우수 사례 소개, 쉬운 행정 언어 작성법, 수어 및 음성 안내 이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복잡한 행정 문서를 쉬운 말로 바꾸는 방법 교육,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한 문서 작성 실습, 쉬운 말로 바꾼 행정 문서 사례 공유 등

나. 교육 진행 방법

교육 대상

(1) 본청 관련과 공무원 및 산하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직원 (기초·심화)

(2) 기초지자체 공무원 (기초/권고)

(연간 8시간 진행)

교육 방법

(기초 교육) 다양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위탁하여 원격 교육을 진행

(심화) 전문 교육 단체 및 업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

다. 교육 수료자 대상 정보 접근성 매뉴얼 배포 및 실무 적용 지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매뉴얼 마련

- 가.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 특성별 내용 제공

-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 포상 계획 수립

기대효과

공무원의 장애 이해도 향상 및 정보 제공 역량을 강화하여 경기도 전역의 행정 정보 접근성 수준을 높인다. 차별 없는 포용적 행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공공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장애인 친화행정을 실현함.